
재해 복구 지침

재해 복구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보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해 복구 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재해 발생 시 정보서비스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인원, 유관부서, 협력기관, 정보시스템 등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정의)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재해 : 재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
2. 재해 복구(DR, Disaster Recovery) : 재해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(정보서비스)의 재개

제4조(재해 복구 체계) 재해 발생 시 사전 정의한 핵심 업무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효과적인 재해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1. 재해 복구 비상연락망
2. 재해 복구 조직 및 역할
3. 재해 복구 계획
4. 재해 복구 절차

제5조(비상연락망)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망(별첨-2.12.1-2)을 구축하고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재해 복구 조직 및 역할) ① 재해복구반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한다.

② 재해복구반은 정보보호 실무조직으로 구성한다.

③ 재해복구반장은 협력업체에 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상위기관에 재해 사실을 신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재해 복구 계획) ①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.

1. 재해유형 식별 및 재해유형별 업무 영향 파악
2. 주요 업무 식별 및 업무별 중요도 평가
3. 업무 중단에 따른 정성적 손실 정도 평가
4. 업무 중요도 및 업무 중단에 따른 손실 정도를 기반으로 복구우선순위 업무 파악
5. 복구우선순위에 따른 업무별 복구목표시간(RTO) 및 복구목표시점(RPO) 결정
6. 정보시스템 복구 순서
7. 재해복구시스템 운영

② 제1항에 따른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 복구 계획(별첨-2.12.1-1)을 참조한다.

제8조(재해 복구 절차) 재해 발생 시 재해 복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한다.

제9조(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해 복구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시나리오 기반의 재해 복구 시험 계획 수립
2.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효과성 검토
3. 재해 복구 절차를 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 시 비상연락망의 인원 참여

② 재해 복구 시험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,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재해 복구 체계에 반영한다.

부칙(2022.07.01.)

이 지침은 2022.07.01.부터 시행한다.